

#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개정 2019.09.16., 개정 2020.03.30. 개정 2022.03.04.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 전임교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의 효율적 관리와 연구효과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연구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16.>

## 제2조 (지원방향)

-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 능력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전임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여 학문의 발전을 기한다.
- ② 대학 및 학과의 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경쟁력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한다.
- ③ 연구과제에 대한 엄정한 심사 및 관리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 (지원 대상)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개정 2019.09.16.>
- ② 기타 본교 발전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9.09.16.>

## 제4조 (지원 분야)

연구과제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연구자의 전공분야에 관한 과제
- ② 대학 및 학과의 발전에 관한 기획 과제
- ③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관한 연구

## 제5조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축소 및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 (신청)

- ①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산학협력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7., 2020.03.30., 2022.03.04.>
- ② 연구의 특성상 연구계획에 대한 부분의 서식은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선정)

- ① 소정양식에 의거 접수된 연구비 지원신청서는 학술연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에 의뢰 할 수 있다.
- ② 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이공.공업계열, 간호.보건계열 등으로 구분하여

학술연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9.04.17., 2022.03.04.>

- ③ 교외연구비 활성화를 위하여 전(前)년도 교외연구비 신청자는 연구비 신청서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 ④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제8조 (연구비 사용)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사용한 후 정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3.30., 2022.03.04.>

#### 제9조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부득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보고서 제출)

- ①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완료 후 연구비 집행 정산서를 포함하여 기일 내에 제출한다.
- ② 연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후보 학술지, 해외학회지 또는 동수준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 발표 후 논문 게재지와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과제 연구는 최종연구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논문에 “본 연구는 0000년도 해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 제11조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 할 수 있다.

- ① 연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②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비의 지급을 받았을 때
- ③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의 연구보고를 하였을 때
- ④ 동 규정 10조(보고서 제출)의 ②항 또는 ③항에 의거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개정 2019.04.17.>
- ⑤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 ⑥ 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할 때
- ⑦ 기타 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사항이 발생 될 때

#### 제12조 (연구 신청자격 제한)

제11조(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각호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연구신청을 3년간 제한한다.

제13조 (세부사항)

연구비를 지급 받는데 필요한 세부사항 및 양식은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2015.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연구비지원과제규정 또는 교내외연구비지급관리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 연구계획 평가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				
		⑤	④	③	②	①
연구의 필요성(20)	연구주제와 책임 연구자 전공과의 연관성(5)					
	연구내용과 연구 계획 간의 적절성(5)					
	결과물을 얻기 위한 적절한 연구방법인가(5)					
	연구과제의 중복성은 없는가(5)					
연구계획서의 구체성(20)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객관성(5)					
	연구기간의 적정성(5)					
	전공관련 참고문헌의 인용정도가 적당한가(5)					
	계획서 구성의 체계성(5)					
연구비 선정의 합리성(20)	연구비 소요예산 작성기준에 부합되는가(10)					
	연구비 예산의 적정성(10)					
연구 기대효과(10)	예상되는 연구결과를 이용한 효과(10)					
연구책임자의 연구 수행능력(30)	연구책임자가 과거 유사 연구 수행경력(5)					
	연구책임자의 학위논문 전공과의 연관성(5)					
	관련학회지의 논문발표수(5)					
	연구량의 적정성(5)					
	연구의 계속 수행 여부(10)					